심 사 보 고 서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1

2017. 1. 19.(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1월 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월 19일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부지를 임상

시험센터 건립·운영 기관인 ‘충북대학병원’ 또는 ‘오송첨복재단’에 무상 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부지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82번지

○ 면　　적 : 14,545.3㎡

○ 사용목적 : 임상시험센터 건립

※ 건립검토기관 : 충북대학병원 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사용기간 : 20년(첨복단지 특례조항)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경형)

가.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무상임대 하려는 것으로,

나. 오송임상시험센터는 오송첨복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된 신약후보물질을 임상 시험하는 곳으로 오송첨복단지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연구지원시설임

다. 임상시험센터가 건립되면 오송첨복단지가 신약개발의 전(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이 강화되고 첨복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라.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설립 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임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사업개요

○ 위　　치 : 오송읍 연제리 682번지(첨단임상시험센터 내)

○ 규　　모 : 부지 14,545.3㎡, 건축면적 6,600㎡(지하 1층, 지상 4층)

※ 임상시험병상 : 60병상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3년)

○ 사 업 비 : 301억원(국비278, 도비 11.4 청주시 11.4)

○ 주요기능

- 첨복단지내에서 개발되는 신약 임상시험(1상 중심)

- 국내외 임상 정보 및 기관 네트워크 등 임상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추진경과

○ ’16. 1. : 설계비 8.3억원 국비 반영되었으나 기재부에서 미배정

○ ’16. 2. :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MOU(재단,충북대병원,도)

○ ’16. 4. :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위원회 개최(건립 자문)

- 건립 후 운영주체인 충북대병원에서 건립위원회를 주도

○ ’16. 8. : 기재부에서 건립방침 변경(국가⇒지자체) *예산변경

○ ’16. 11. : 임상시험센터 건립 설계비 예산배정(복지부⇒충북도)

□ 향후계획

○ 임상시험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세부 협약 체결(공증,공고)

- ① 충청북도 ② 청주시 ③ 첨복재단 ④ 충북대병원 간 협약체결

○ 부지매입 및 계약 : 한국토지공사, 충북도, 청주시

○ 건립·운영기관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17.2.)

○ 임상시험센터 건립 추진('17.3.~)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팅 센터(조정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유 가능

○ 첨복단지 내 핵심시설 확충을 통하여 신약개발의 전주기적 지원 가능

○ 첨복단지가 임상관련 R&D기능 강화되면서 연구기관 집적화

관련법령 발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 허가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7.20., 2016.7.12.>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